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9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 사항 반영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 조항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등

나.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함.

- 수피(樹皮) → 나무껍질, 여타(餘他) → 그 밖의, 미연(未然)에 → 미리 등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오기사항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

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의 수목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관리청란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을“(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을“(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별표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도로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도시철도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야간경관 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

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5호 중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여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4항 중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83조의2”를 “법 제83조의2”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1)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제26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자목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3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중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을 “특별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별표1의2”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별표1의2”를 “영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영 별표3의2”를 각각 “영 별표 8”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법 제6조”를 “특별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38조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1조 중 “영 별표1의 2”를 “영 별표 3”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영 별표1의2를”을 “영 별표 3을”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2조제3항”을 “법 제72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7호 중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한다.

제29조제9호나목, 제37조제8호나목, 제38조제9호나목 및 제55조의2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8조제5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0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의3 각 호”를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의 허가 기준란 (1)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39조제12호”를 “영 제39조제14호”로 한다.

제4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1항 후단”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6항 중 “제1항 각 목”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

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행령 제10조”를 “영 제10조”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 중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를 각각 “영 제1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 중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1조에 또는”을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동물보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적·환경적·생태적”을 “사회적·환경적·생태적”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간사와”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풍양속 양양”을 “미풍양속 드높임”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전반적 금지의 금지영업 및 시설란 제9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에서 전반적 금지의 금지영업 및 시설란 제14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서

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44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호”를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

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을 “「악취방지법」 제16조의7”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2”를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2”로 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

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 제26조제3항”을 “「수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영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7항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의2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산업·교통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표 공공·공용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제39조”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5조의3”을 “법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을 “법 제4조제6호”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

다.

제86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산정기준란 2.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2조제10항”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경제일자리기획관”을 “거점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원법 제18조의5”를 “정원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9호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3호 중 “조례 제15조의4”를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3항”을 “법 제95조제1항,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하며, 제8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으로 하고, 제23호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제30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을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조제9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미풍양속 양양”을 “미풍양속 드높임”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내경”을 각각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3 □ 사용료 산정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 수질하수도사용료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5항 별표1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 14”로 한다.

별표 4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으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을지로 1(태평로1가)”를 “세종대로 110(舊시청사)”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사기양양과”를 “사기를 드높이고”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168”을 “160”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통일로 684(녹번동)”을 “통일로62길 7”로 한다.

별표 2 수도사업소 제2호의 위치란 중 “통일로 26길”을 “통일로26길”로, 제

3호의 위치란 중 “고산자로 10길”을 “고산자로10길”로, 제5호의 위치란 중 “목동 동로”를 “목동동로”로, 제6호의 위치란 중 “여의대방로 10길”을 “여의대방로10길”로 하고, 같은 표 아리수정수센터 제3호의 위치란 중 “왕십리길 27(성수1가동)”을 “왕십리로 27(성수동1가)”로 한다.

별표 4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위치란 중 “남산공원길 649 (회현동1가)”를 “삼일대로 231(예장동)”으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위치란 중 “여의대방로 98(신대방동)”을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으로 한다.

별표 5 서울특별시남부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1451”을 “145”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768”을 “913”으로 하며, 같은 표 서울특별시강서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양천길 510”을 “양천로 23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개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의안으로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법무담당관 박태준(2133-6692)